

제319회 임시회

2013. 4. 16(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9일

3. 제안이유

- 가.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,
- 나.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완화 (안 제14조)
- 나.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 보장 (안 제31조)

5. 검토내용

-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  - 의용소방대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 시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 및 출동(동원)에 불참할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자원자 부족 및 대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동(동원)에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,

-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시·도연합회장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소방기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시·도 및 시·읍·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자원자로 구성하되, 설치 및 운영 등은 시·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13. 3. 12. ~ 4. 1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가.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